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31426] 준비중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10.4] yyjmail@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8.7]

[원앤식스커피]

정 보 공 개 서

[원앤식스커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원앤식스커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5, 1층]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10-8529-5163][가맹사업 담당부서 : 가맹사업부]

[가맹사업 안내전화번호 : 010-8529-516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원앤식스커피	원앤식스커피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5, 1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	2014.12.01.	이영중	010-8529-5163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06-26-986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	이영중/ 원앤식스 커피	원앤식스커피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5, 1층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이영중	010-8529-5163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원앤식스커피”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브랜드 명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
원앤식스커피	원앤식스커피 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1 참조)

(단위:천원/VAT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6,421	2,791	43,630	254,501	17,640	20,988
2022년	26,569	3,952	22,617	267,589	19,487	22,185
2023년				297,632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영중	대표	2014.12.01. ~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1) 영업표지 관련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 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원앤식스 스커피	영업표지	출원 2009.11.25 등록 2011.02.22	출원번호 4020090058311 등록번호 4008542530000	이영중	2031.02.22

2) 기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해당없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I. 당사의 [원앤식스커피] 가맹사업 현황

1. [원앤식스커피]를 시작한 날 : 2023. 6. 1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 12. 1.)

2. 원앤식스커피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원앤식스커피	원앤식스커피	이영중	2023. 6. 1. ~ 현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5, 1층

3. [원앤식스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원앤식스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및 음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원앤식스커피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	0	1	1	0	1	2	1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0	1	1	0	1	2	1	1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원앤식스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1	0	0	0	1

6. 원앤식스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개미만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원앤식스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13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장흥군지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7	061-862-7811

2) 귀하가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금을 예치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방법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맹금 예치 가능>

☐ 은행영업점방문 : '가맹금예치신청서'와 본인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 인터넷뱅킹이용 : 농협은행 홈페이지 ⇨ 기업 ⇨ (우측)기업서비스 ⇨ 가맹금예치제도 ⇨ (좌측)가맹점사업자 ⇨ 가맹금예치

※ 가맹본부명(상호), 프랜차이즈명(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을 알아야 예치가 가능

귀하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당사는 예치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건에 따라 당사는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증권을 제시하여 당사가 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원앤식스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O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X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신규	가맹비	2,200	계약체결 시	영업 개시 전 해지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5,500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금삼백만원(₩3,000,000)입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천원/VAT포함)
합계	10,700
가맹비	2,200
교육비	5,500
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 별첨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132㎡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118,800			-	-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미지정)	88,000	2,200	인테리어 개 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공사 전 계약취소	자체시공 권장
						공사감리비 평당 25만원
필수설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미지정)	22,000	55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자체구매 권장
간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미지정)	3,300	-			자체시공 권장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	오픈 1일 전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 소요비용	철거, 전기승압, 가스, 냉난방기, 상하수도, 화장실, 오디오, TV, 정수기, 어닝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제한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월 33만	매월	후불로 반환 안됨	후불로 반환 안됨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반환불가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협의	제작실비 제외후	-
교육훈련비 (수시교육, 특별 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	제작실비 제외 후	32쪽참조
POS사용료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로열티는 물가인상 및 경제여건의 변경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본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년 4회 이상 가맹점의 매출상황 및 회계원장 등을 "갑"이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본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본사"의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본사"가 판매증대를 위하여 영업행위에 관련된 판매실적, 판매동향, 제품반응, 소비자 정보 등 제반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장소, 대표자 및 점포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본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갑”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수가맹비(교육비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사용에 해당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원앤식스커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원앤식스커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2) 당사가 [원앤식스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4]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상품공급 중단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또는 해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안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안)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별첨4]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또는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업종	원앤식스커피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단, 학교 앞 상권을 학교별로 구분하며 8차선 대로변 상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권은 분리된 상권으로 한다.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원앤식스커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기타	특정 불가	원두	원두가 다름

* 당사의 경우 특정 영업표지(브랜드)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지 않고 다수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원두를 직접 공급하고 있어 영업표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장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장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	92%	-	-

*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

* 당사는 가맹점과 오프라인 판매상품이 전부 같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이 0%이며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원앤식스커피]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갱신 시에도 2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계약서 제6조 제2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14조 제 2항에 따른 로열

티를 매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하며 만약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4) 계약종료 및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약서 제33조 각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앤식스커피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개월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조달(사입)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 고객 판매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판매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5일 이상 점포운업을 중단하거나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법령의 요청 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가맹점이 폐점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3조 3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3항

- ③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3조 2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3조 2항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33조 2항

- ④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4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원할 때에는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③ 양도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양도의 의사표시를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④ 가맹본부는 ②, ③의 통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⑤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을 포기하며, 양수인은 양수가맹비(교육비포함)를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상속인은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정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원앤식스커피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커피 및 기타음료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2명이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및 위생 상태, 조리상태, 서비스 상태,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에서 개별 진행			가맹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진행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은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사가 제공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이천만원(W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제1항
귀하가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이천만원(W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제2항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 부 부담 비용비 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 포 의 시설, 장 비, 인테 리어 등의 노 후 화 가 객 관 적 으 로 인정되 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 하여 가맹 사업의 통 일성을 유 지하기 어 렵거나 정 상적인 영 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 판 교 체 비용 - 인 체 리 어 공사비용(장 비, 집기의 교 체 비 용 을 제외한 실내 건 축 공 사 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 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 점 사 업 자가 추가공 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 요되는 비용 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 을 수반 하지 않 는 점포 환 경 개 선 시 :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 을 수반 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시: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점 포 환 경 개 선 일 로 부 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 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 의 해지, 영 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 례하는 부담 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 나 이미 지 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 능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원앤식스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등	실습교육, 개별 및 집단강의	개점 전까지	필수
수시교육	신메뉴 가공 등	실습교육	협의	필수
특별교육	필요시	실습교육	-	필요시, 자율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원앤식스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20시간 (5일)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필요시 산정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오픈이 불가하거나 개점이 지연될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개점 이후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점포평가 반영 및 재계약시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전남	본점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9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97,63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금액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필수공급상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메뉴 및 권장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6

(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